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2017. 9. 7. (목) 14:00~16:3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행사순서

14:00	개회선언	○사회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14:05	인사말	○국회의원 이학영
14:15	피해사례발표	○사례1 : 피자헛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회장 ○사례2 : 르노삼성자동차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 조덕근,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장 ○사례3 : 미스터피자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회장 ○사례4 : 샘표식품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 이호열, 경인지점 인천 서구 대리점 ○사례5 : 남양유업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 장성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사례6 : 이동통신대리점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
15:00	발제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정책국장)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15:30	토론	○토론문 1 :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토론문 2 :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 및 개선방안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양기만 팀장) ○토론문 3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토론문 4 :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토론문 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우 변호사)
16:10	자유토론 질의응답	- 점주단체별 1 ~ 2개 피해사례 발표 등 자유발언
16:30	폐회	- 사회자

• 목 차 •

인사말

국회의원 이학영	1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3

피해사례발표

○ 사례1 : 피자헛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4
-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회장	
○ 사례2 : 르노삼성자동차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6
- 조덕근,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장	
○ 사례3 : 미스터피자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8
-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회장	
○ 사례4 : 샘표식품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10
- 이호열, 경인지점 인천 서구 대리점	
○ 사례5 : 남양유업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12
- 장성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 사례6 : 이동통신대리점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17
-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	

발 제

○ 발제 1 :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19
- 정종열 가맹거래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정책국장	
○ 발제 2 :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32
-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토 론

○ 토론문 1 :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43
- 서울특별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 토론문 2 :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개선방안	48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양기만 팀장	
○ 토론문 3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49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토론문 4 :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5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 토론문 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51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우 변호사	

인사말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학영입니다.

「가맹점·대리점 거래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가맹점주협의회와 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OECD평균의 두 배에 육박할 만큼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한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어느 법률보다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재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가맹점을 내주어 매출감소를 겪거나, 갹신요구권이 도래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갹신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법 취지에 어긋난 행위들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업자들이 대응하려해도 본사가 대화를 회피하거나, 협의회 구성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는 이 같은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의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을 토대로 공정위가 보다 현실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가맹점과 대리점 사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 인사말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

지난 2016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를 당하여 가족과 직원의 생계가 막막하게 된 사례를 발표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던 점주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국가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단체들이 대기업 본사와 상생교섭을 통하여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주단체·대리점단체와 본사 사이의 교섭과정에서 점주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집단 자치의 활성화가 경제민주화의 기본실천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행정의 후견적 지원과 법제도의 뒷받침이 따른다면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경제의 달성은 먼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단체·대리점주단체들을 결성하여 옆에 있는 가맹점주들을 이끌고 단결하여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체 내에서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조합원을 교육하고,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고, 대표를 뽑아 본사와 교섭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해 나갈 때 저희 시민단체들도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같이 어깨 걸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례1

피자헛 :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회장

1.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현황

한국 피자헛은 현재 330개의 가맹점을 운영.

가맹점주들을 회원으로 하며 회장단 (회장·부회장·감사·총무) 30명이 지역별 지역장으로 현재 회장은 윤혜순(동수원·신림2)

2. 문제점

(1) 부당한 갱신 거절

(2) 과도한 할인 행사에 일정비율 초과할인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가맹점주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음

(3) 2015년 10월 8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지만 미 준수

(4) 가맹점이 모아 사용을 하도록 가맹본부에 위임한 마케팅 펀드 사용내용 공개하지 않음. 상품 광고비용을 가맹점에게 전액 부과함으로써 점주들이 경영상 고충

(5)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 부과에 대한 문제점

- 매출에 로열티와 광고비, 어드민피로 11.8%를 내고 있습니다. ACE, FSCC, 전산유지비, 콜피 등 필요경비로 피자헛에 항목별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본사 마음대로 정한 비율로 본사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임.

- 어드민피 관련한 행정법원에서의 피자헛 패소판결은 피자헛이 근거없이 부과한 어드민피가 불법적이고 갑질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임.
- 어드민피를 처음에는 0.5%. 중간에 0.6%. 현재 0.8%로 본사 마음대로 올렸음.
- 재계약시 본사가 영문도 있는 한 권짜리 두꺼운 계약서 주고, 맨 마지막에 합의서 작성하라고 하면 많은 돈을 투자한 우리는 계약 연장을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음.

3. 개선방안

- (1) MF(마스터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
- (2) MF(마스터프랜차이즈) 진행시 가맹점협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절차상 문제에 대한 스티븐 사장의 사과
- (3) MF(마스터프랜차이즈)의 2015년 10월 8일 상생협약안 준수 약속
 - ① 가맹점과 재계약 갱신 보장(재심위원회의 구성,구체적이고 명확한 계약 해지 기준을 공지).
 - ② 할인시 협의회 동의 절차 준수 및 과도한 할인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공정한 비용 분담
- (4) 마케팅 펀드 투명한 공개
- (5) 어드민피 관련 소송 대승적 차원 마무리

피해사례2

르노삼성자동차 :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 조덕근,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장

1. 르노삼성자동차 정비사업자연합회 현황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국적으로 정비를 담당하는 정비업체로 구성된 르노삼성자동차 전국 정비사업자 연합회. 전체 가맹점수 460개 중 330개 가입.

2. 문제점

글로벌 기업이라는 르노에서 한국표준공임에 50%도 안 되는 금액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범용적인 저가 부품을 비싸게 공급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이익을 강탈해서 한국에 재투자하지 않고서 본국으로 빼내가는 형태에 저희 같은 외국 정비위탁업체들은 국내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정비업체들은 가맹법 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가맹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가 가맹점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

(1) 순정품만 강매

- 부품가격을 비싸게 책정 공급하면서 순정품만을 강매
- 부품이 비싸다고 정비업체에 마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모기업 이익

(2) 국내 자동차 수리업체보다 낮은 임금

인건비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낮은 공임과 높은 부품비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

(3) 보증수리 시 터무니없이 낮은 보증수리 공임.

- 보증수리 차에 대한 보증수리공임은 일반수리와 똑같은 수리를 하는데도 보증수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수리공임의 50%도 받을 수 없어 보증수리를 기피하는 현상

(4) 부품 구입강제(밀어내기)

- 센터급 규모의 사업장에는 월말이면 부품을 모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필요하지도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을 밀어내기로 떠넘기는 일도 생김

3. 개선방안

(1) 보증수리 기간 중 공임비용 현실화

- 일반수리 공임의 50% 수준은 합리적이지 않음. 해외사례(80 ~ 90% 수준)를 참고하여 조정필요

(2) 국내 브랜드와 외국브랜드의 차별없는 합리적 법적용

- 국내브랜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외 다수의 여러 정비업체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르노자동차 정비업체도 가맹사업법 적용필요

(3) 과도한 물류마진 합리화

- 엔진오일 가격비교(1드럼당)

본사구입가격 : 382,000원, 가맹점공급가 : 900,000원

시중구매가격 : 480,000원

-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등 필수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격으로 조정

피해사례3

미스터피자 :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회장

1.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현황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430여개의 매장이 최근 잇따른 악재로 인한 폐점 등으로 인해 현재는 직영점 20개, 가족점 315개, 총 335개.

미가협 가입 200여 매장이 가입하여 활동.

가맹본사가 상생협약을 미준수하는 행위 등으로 218일의 농성을 이어갔으며,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냄.

2. 문제점

(1) 원자재 독점 공급으로 받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익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이외에 원자재 공급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 가맹점 수익악화의 근본원인

(2) 가맹본부의 원자재 독점 공급은 상품원가의 상승요인

독점공급이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되어 왔기에 원가의 비공개와 중간에 특수관계인 등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끼워 넣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각종 식자재에 리베이트, 본사가 물류공급업체에 대금 결제일을 1~2개월 미루는 것으로 인해 식자재가격의 상승요인

(3) 가맹본부의 품질의 일관성 없는 원·부자재 공급

또한 필수 품목이라는 굴레를 씌워 일관성 없는 치즈 와 새우 같은 품목을 공급하

거나 일부 물품에 브랜드 로고만 붙여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심지어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판촉물을 통해서도 이윤을 붙여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

(4) 그 외 가맹본부의 원자재 독점 공급의 문제점

영업과 마케팅에 집중하여 매출을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질. 과도한 할인행사(할인비용 대부분 가맹점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은 원·부재료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이익은 감소하여 폐점 속출.

3. 개선방안

- (1)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이를 통한 값싼 양질의 원재료 구입 후 가맹점에 공급
- (2) 이미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매협동조합. 본사는 영업과 마케팅 그리고 개발에 집중하고 구매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원재료를 싸게 구매하여 가맹점에게 공급
- (3) 본사는 가맹점과 협의하여 원재료의 스펙과 퀄리티를 정하고 안전성을 검증하여 구매협동조합에 요청하면 구매협동조합은 그 기준에 맞춰서 입찰 등을 통하여 원재료를 선정하여 공급

※ 구매협동조합 장점

- 가장 최적의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가맹점의 경쟁력 향상
- 가맹본부의 모든 역량을 영업, 마케팅, 개발 등에 집중시켜 매출의 증가
- 가맹점사장님들의 원재료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신뢰구축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비용전가나 오너의 일탈에 대한 견제

피해사례4

샘표식품 :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 이호열, 샘표식품 경인지점 인천 서구 대리점(창영상사)

1. 피해 사례

2015년

- 주요제품 행사 중단, 회의참석 제외, 순회직원 철수, 행사직원 철수
- 1. 샘표제품을 본사공급이 아닌 외부매입 사유(지방,이클럽)
- 2. 복합대리점 시작 사유(해표식품)

2017년

- 신규대리점 개설(샘표 본사에서 김앤장로펌에 자문결과 문제의 대리점을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자율경쟁에 의한 자연 도태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개설함)
- 악의적으로 업무 평가 절하함(거래처 관리 및 실적)
- 4월 21일 통보, 5월 신규대리점 개설
- 신규대리점과 주변 대리점에 가격 할인 제품을 지원.
- 저희 대리점에 매출감소, 수익률 하락으로 채산성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져서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 신규대리점에게 일부지역 거래처를 넘기라고 종용함(영업지역 분화)
- 거래처를 넘기면 모든 통제를 풀고 행사지원을 한방에 정상화 한다고 합니다
- 본사직원들이 저희 거래처에 방문하여 타 대리점과 거래하라고 종용하거나, 저희와 문제 있으면 연락 달라고 부정적으로 상담진행.
- 타 대리점이 저희 거래처를 공격하여 본사 막아달라고 하면 공정거래법상 관여할 수 없다고 하고 반대의 경우 거래처에 가서 설득함.

- 장려금 및 행사제품 지급 매장을 강제로 변경 신규 대리점으로 이관함
(60->30 축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 제외)
- 반품 건, 샘플식품은 현재 고회전 품목은 출고가대비 20%, 저회전 품목 및 신규제품 50~100% 반품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분은 대리점의 잡손실로 처리

2. 법안개정 요구사항

1. 영업권은 생존과 일치 합니다, 같은 지역에 신규 대리점 개설시 기존 대리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본사가 대리점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작태에 대한 방지가 필요합니다
3. 대리점이 본사 평가자의 무능이나 비도덕적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에 방지가 필요합니다
4. 한정된 지역 수요처에서 대리점 과잉공급을 막기 위한 본사 권한 남용 방지 법안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리점은 구인난, 각종 비용 상승,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입으로 진짜 어렵고 힘듭니다. 게다가 이이제이 식으로 자행되는 본사에 갑질은 기존 대리점 구성원의 생존권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수능을 앞둔 고3 자식이 있고 팔순 아버지에 건강 악화로 통원 치료가 잦으니 본사와 싸울의지도 여력도 없다고 수차례 호소하며 사정하였으나 평가절하와 악의적 소문까지 만들며 명예훼손도 입었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피해사례5

남양유업 :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 장성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1. 피해 사례

○ 밀어내기(2013년 5월 갑질 논란 제공)

2014년 이후 전남 광주지역에서 밀어내기 발생. 2013년 이전 수준의 밀어내기.
밀어내기 증거를 수집하여 아래 증거 목록으로 공정위 신고하였음.

※ 증거 목록

(1) 주문확정자료

팜스21프로그램 주문내역을 엑셀로 전환한 자료.

1) 주문시스템 변경

공정위 명령으로 주문시스템을 변경함. 대리점주가 주문한 기록을 볼 수 있게 하고 부득이 하게 주문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사유”란을 만들어 사유를 적게함.

2) 변경사유

변경사유는 “유통업체발주”와 “도매추가발주”가 있음.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대리점주와 달리 신고인은 변경사유란에 “유통업체발주”와 “도매추가발주”가 많음.

3) 지금의 변경사유

밀어내기 피해를 호소한 이후 변경사유는 없음.

4) 피신고인 주장

대리점주가 유선으로 전화하여 추가 한 것일 뿐 밀어내기는 아니다. 또한 지금 변경사유가 없는 것은 신고인이 유선으로 추가주문을 하지 않아 변경사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신고인은 유선통화기록을 확보 가능한 최대 범위를 확보.

(2) 로그파일

팜스21프로그램 로그 - 주문시간, 주문제품, 주문수량 등의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3) 구입강제율

로그에 얻은 주문제품코드, 주문제품수량을 데이터화 하여 구입강제율을 구함.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밀어내기가 있고 품목도 신제품, 유통기한 긴 제품, 대표상품으로 2013년 이전의 밀어내기와 비슷한 패턴을 보임.

(4) 유,무선 통화기록

증거 목록 1 - 4)에 보강 자료로써 통화기록을 확보 함.

1) 유선통화기록 (피신고인은 대리점 경리가 유선으로 추가한 것이라 주장을 하였음)

2015년 8월은 해당사항 없음.

9월 달은 5일 통화 하였고 횟수는 7회. 7회 중 주문 마감 전 오후 1시 이전의 통화는 4회. 이 4회 중 1회는 통화 이후 컴퓨터 주문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음.

(로그 기록에서 확인 가능)

10월, 11월 1건씩의 통화가 있었고 그 시간도 주문시간이 훨씬 이후인 늦은 오후.
유선통화내역을 살펴 본 결과 신고인 경리가 추가 주문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주장.

2) 무선 통화 기록 (신고인 휴대폰)

6개월 동안 총 61건의 통화가 있음. 이 기록에는 일반 문자와 멀티메세지도 포함.

6개월 동안 주문 마감 전의 통화 내역은 단 16건.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주문 수정 요청하였다면 평균 한 달에 약 3건 정도 수정을 요청한 것. 그러나 11월 한 달에만 17일에 걸쳐 밀어내기.

신고인은 휴대폰 통화기록에 있는 16건도 주문을 수정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며 혹시 신고인 본인이 기억 못하는 주문 수정 요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통신사에게 음성통화내용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통신사는 음성통화는 검찰에서 요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매우 답답한 상황.

(5) 거래처사실확인서

1) 어린이집 사실확인서

어린이집 급식으로 흰우유 200ml를 납품해야 하지만 밀어내기 당한 1000ml로 대체하여 납품을 하다 거래가 중단 된 거래처 사실확인서.

2) 마트 사실확인서

맛있는 우유 1000ml를 1,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많고 유통기한이 짧아 소비자 항의가 많았음. 소비자 항의가 지속되자 거래처에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경고 한 사실도 있음.

(6) 거래내역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거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장부. 입금금액이 적혀 있음.

1) 선 결제 후 확인

거래내역서에는 문서출력일이 남겨 있음.

카드사는 8일 ~ 11일 사이에 신고인에게 받아감. 하지만 거래내역서(마감장)은 약 1주일 후에 대리점에게 알려줌. 즉 신고인에게 입금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피신고인은 삼성카드사로부터 대납을 받음.

2) 프로모션 제공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해주기 위해 주문을 더 한 것이라 함.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신제품 팔아라, 목표 못하면 지점장 면담 잡는다. 이런 문자는 받았어도 목표를 협의 한 적 없음.

거래내역서에 제품 d/c 공제 내역 있음.

(7) 밀어내기 분석 자료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프로모션을 제공하였기에 밀어내기가 아니라고 주장.

이에 대해 전 제품을 상세하게 풀어서 제품별 밀어내기 총액과 프로모션 비용을 비교 분석. 6 - 2)에 대한 반박 자료.

(8) 문자내역

피신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는 거의 다 캡처해서 제출. 신고인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문자는 별도로 폴더를 만듦.

ex) 9월도매매출이 작년대비 감소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작년대비 도매 매출이 감소하는 대리점은 10월 별도면담예정입니다.

ex) 무안대리점입니다. 농협계통아이다 비번알려주시고 프렌치는 그만보내주세요

ex) 본사에서 불가리스20s 주문관리를 부탁하여 불가리스20s를 주문하였습니다.

(8) 녹음 파일

1) 피신고인측 광주지점 과장과 대화녹음 (1시간 30분)

39 : 00 ~ 42 : 00 “본사의 정책이 아니라 지점 영업사원의 밀어내기이다.”

2) 광주지역 대리점 사장과 통화 녹음 (10분 23초)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총대 메고 있다. 요즘은 사장님 덕분에 할만 합니다.” “모 대리점에서는 그래요, 그나마 사장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남양유업이 똑바로 요즘 돌아간다.”

이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신고인은 밀어내기를 인정하지만 말단직원의 실수다. 또한 신고인이 불공정 피해 호소를 하니까 주변 대리점들이 덕보고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

광주지역 대리점 사장은 신고인 무안대리점이 보복 당하지 않을까 고민해주는 통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 거래내역서 조작으로 금품 갈취

공정위는 2013년 7월 남양유업에게 입금시스템을 변경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음.

현재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동의없이 삼성카드사로 물품대금을 선 청구 함.

선 청구 약 일주일 후 대리점주에게 거래내역서 확인 시켜 줌.

상당히 많은 대리점들이 이중장부로 피해를 보았을 것을 예상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여러 장부를 통해 남양유업이 대리점주 돈을 갈취한 자료 확보

○ **보복행위**

회사에 문제제기 하는 대리점에게 보복성으로 담보물을 경매, 압류조치
미수금에 대한 안내도 없음, 미수내역 공개도 하지 않음.
회사에 문제제기 하는 대리점에게 보복성으로 상품공급 중단.

○ **부제소합의서 수차례 작성 강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강요, 회유.
1부만 서명 후 회사가 가지고 감. 밀어내기 피해 주장하는 대리점들은 부제소합의서
서명으로 인해 피해배상 권리 포기하기 됨.

2. 법안개정 요구사항

○ **전속, 비전속 법개념 정리 필요.**

현 식품 유통생태계는 비전속대리점 형태로 변화가 빠름. 비전속대리점이라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례는 없음. 오히려 비전속대리점을 운영중인 대리점주의 장
부를 조작하여 약 천여만원을 갈취함.

○ **단체 결성 및 단체 교섭권**

○ **표준계약서 의무화**

피해사례6

이동통신대리점 :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

1. 피해사례

- 업종 특성 상 계약 기준 판매수수료 약정 변경 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운영
 - '을'의 전자 날인 승인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전산 중지로 거래 관련(주문, 정산, 기타 업무 등) 업무 불가로 약정 내용의 불합리 시 이의 제기 불가
 - 이의 제기 시 전산 업무 중단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을'의 책임
- 계약 만기 시 자동 연장 명시되어 있음에도 약정 추가 등 재계약 시 강제조항 발생
 - 본 업종 특성 상 계약 해지 시 가입자 환수 등 재산상 피해 발생
 - 이로 인해 재계약 시 계약 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이의 제기 불가능
- 대리점 지원 약정서(간판, 인테리어 등)에 지원을 변경 임의 조치
 - 판매 목표 부여 및 미달 시 지원금 환수 조치 시행으로 피해 발생
 - 판매 약정 체결 시 내용과 상이한 거래 관계 운영 (목표 판매, CS목표, 매장 관리 지수 목표 등)으로 판매수수료 차감 등 일방적 운영으로 피해 발생
- 대형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는 일반 유통망 대비 3~5배의 판매장려금 수수
 - 대형유통-통신사 자회사와 일반 유통망 간 차별 발생
 - 자본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경쟁 열위 상황에 처해있는 골목상권 유통망의 시장 탈락 가속
- 대형유통은 전산 미존재로 CS업무를 골목상권에 떠넘김
 - 골목상권의 CS업무 독박으로 인한 종사자 업무 피로 및 고객 상담 불가 사태 발생으로 피해 발생

- 업무 시간 대비 지나치게 낮은 업무수수료로 인한 피해 발생
- 신제품 및 선호 단말기 대형유통-통신사 자회사 우선 공급
- 골목상권 유통망 선호 단말기 공급 시 부실재고 끼워넣기
 - 골목상권에서 예약 가입 유치한 고객이 단말기 즉시 수령 가능한 대형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 매장에서 구입하거나, 즉시 구매 원하는 얼리어답터 성향의 고객이 골목상권을 기피하면서 피해 발생
 - 선호 단말기를 공급받기 위해 끼워넣기 당한 부실재고는 고스란히 골목상권 유통망의 피해로 이어짐
- MNP 위주의 거래 강제 (단말 기종+고가 요금제 결합 상품에 대한 판매 목표 옵션 부여) 및 부가 서비스 유치 강제
 - 거래 강제로 인한 수수료 차감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그 보상에 대한 책임 100% '을'에 전가
 - 우월적 지위 이용하여 미 이행 시 본부 차원 수수료 차감
- 통신사+KAIT 연계 '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사적 시장 규제 및 시장 자율 및 공정경쟁 규제
 - 수 천 만원의 패널티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 3~5일의 전산 정지로 인한 영업 불가로 금전적 피해 발생

2. 개선방안

- 공정위 조사 및 시정 조치 필요
- 현행 '단통법'의 표준 계약서 준용 운영 요구
- 본 조항(단통법 제 9조)에 관련 상세 사항에 대한 내용 시행령에 삽입 운영
- 매월 작성하는 판매 약정서의 제도 폐지
- 지역 본부 판매 정책 전수 조사
-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부 규정 공개

발 제 1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정책국장

1. 들어가는 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¹⁾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임. 그런데 우리의 경우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²⁾의 소비자³⁾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여 성공모델의 재생산이라는 확산성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이것이 가맹사업 분쟁의 첫 번째 원인 이라 평가됨.

이어 왜곡된 배분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 힘의 불균형, 이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인 원활하지 못한 감독기능이 주된 근본적 원인들 이라고 할 수 있음.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이 확대·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2.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

① 가맹본사 주 수익원 문제

○ 가맹본부의 주 수익이 1차 소비자인 가맹점주에게 집중

가맹본부의 수익이 가맹사업의 본질상 2차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여야 하는데 1차 소비자인 가맹점주에게서 발생하여 서로 윈윈하는 경제적 공동체성에 한계가 있음

1) 노하우·기술·아이디어 등을 함유

2) 가맹본부에게는 1차 소비자

3) 가맹본부에게는 2차 소비자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이 비례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왜곡된 수익구조로 반비례하는 업종 및 브랜드까지 존재

가맹본부의 주 수익 구조가 유통마진, 인테리어 공사 수입 등 출점수익, 특히 무분별한 할인정책 시행 시 가맹본부의 수익은 커지지만 가맹점주의 부담은 커지는 구조가 형성.

< 발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의 수익구조 예 >

더풋샵 가맹본부는 용역의 제공을 가맹사업의 주 내용으로 하는 바 영업표지의 사용대가로 점포별로 매 월 로열티 약70만원(VAT 제외)을 수령하여 총 540,536,326원의 로열티 매출을 가짐.(더풋샵 2012년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참고) 그러나 이는 더풋샵 가맹본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7.52%⁴⁾에 불과하고 신규출점 시 창출되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수입이 1,910,234,690원으로 전체 매출의 62.35%⁵⁾를 차지. 여기에 가입비, 교육비, 개점행사비 등을 합하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

결론적으로, 피신고인의 주된 수익구조는 신규점포 출점을 통한 인테리어 공사수입과 신규 가맹 가입비 등 임.

② 배분의 문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으로 로열티가 비합리적으로 배분되어 가맹점주의 수익이 악화되고 심지어 가맹본부의 수익과 가맹점의 수익이 상관관계가 없거나 편의점⁶⁾ 및 일부 영업표지의 경우 반비례 관계까지 형성됨

< 편의점 주요 4사 연평균 매출액⁷⁾ >

단위 천 원

순번	연도	주요 4개사 가맹점주	주요 4개사 가맹본부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매출액
1	2007	482,184	1,319,638,586
2	2008	528,113	1,520,081,267

4) 피신고인 2012년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자료 참고

$540,536,326(\text{로열티매출액}) \div 3,063,518,582(\text{총 매출액}) \times 100 = 17.52 \%$

5) $1,910,234,690(\text{가맹점 공사수입}) \div 3,063,518,582(\text{총 매출액}) = 62.35 \%$

6) 편의점의 경우 수익배분은 매출총이익을 가맹본부 : 가맹점주가 35% : 65% 배분이 기본구조

3	2009	538,172	1,715,018,143
4	2010	506,383	1,690,524,189
5	2011	482,278	2,157,097,380
6	2012	482,407	2,475,254,974
7	2013	487,879	2,676,876,241
8	2014	510,266	2,866,964,899
9	2015	590,543	3,648,822,087

편의점업종의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수익을 비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된 정보공개서를 기초로 분석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2015년 까지 9개년 동안 가맹본사는 연평균매출액이 2.76배 이상 상승했으나 가맹점주의 연평균매출액은 1.22배 늘어 답보상태로 동 기간의 인건비⁸⁾나 물가 상승률⁹⁾을 고려할 때, 가맹본사의 실질수익은 늘었으나 가맹점의 실질수익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순된 구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이러한 불합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제기하는 불공정거래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개별분쟁 중심에서 집단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7)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시 정보공개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감사보고서 참고

8)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순번	연도	시간급 (원)
1	2007	3,480
2	2008	3,770
3	2009	4,000
4	2010	4,110
5	2011	4,320
6	2012	4,580
7	2013	4,860
8	2014	5,210
9	2015	5,580
10	2016	6,030
11	2017	6,470

9)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구분	소비자물가상승률(%)
2007	2.5
2008	4.7
2009	2.8
2010	2.9
2011	4
2012	2.2
2013	1.3
2014	1.3
2015	0.7

자료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도별 분쟁조정 사건 접수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사건 수	243	218	285	212	172	291	357	447	733	578	554	572	522	5,216

자료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적

가맹사업 분야 집단적 교섭(요청) 건수는 2013년 미니스톱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한 분쟁결과 상생협약이 타결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틀이 형성되어 매년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교섭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고¹⁰⁾, 신규 교섭(요청)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¹¹⁾.

< 2013 ~ 2017 가맹사업거래 집단분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쟁점¹²⁾ >

단위 : 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피해 구제	위약금 감면	1	1	0	0		2
	손해배상	1	3	3	1	1	9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¹³⁾	3	2	2	5	6	18
제도 개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0	2	2	4	8	16
	광고 판촉	0	2	3	4	2	11
	10년차 이후 계약해지	0	0	3	2	5	10
	협력업체 선정 시 리베이트 등 문제	0	2	3	3	1	9
	점포환경개선	0	0	3	0	1	4
	영업지역	0	1	2	1	1	5
단체 활동	가맹점사업자단체 인정	2	5	4	4	5	19
	단체교섭(거래조건협의 요청) 거부	3	4	5	7	3	22
	상생협약 미 준수	0	0	0	2	2	3
	단체활동방해					5	5

가.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를 제외하고 피해구제 보다는 제도개선 및 단체활동 관련 주제가 쟁점이 되고 있음. 여기서 계약해지도 많은 경우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단체활동 방해 성격이 농후함.

나.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문제가 대부분의 교섭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10) 파리바게뜨, 본죽, 뚜레쥬르, 미스터피자 등

11) 르노삼성자동차, 지엠대우자동차, 할리스커피, 뽕뜨락피자 등

12) 2013 ~ 2017 : 당사자 단체/시민사회 영역에서 진행한 집단분쟁 사건의 쟁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일부 집단분쟁은 미포함 될 수 있음.

13) 단체구성원에 대한 전체 해지건 수가 아니라 집단분쟁에서 해지가 문제가 된 경우를 산정

다. 단체활동 관련 쟁점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음

라. 2008년 도입한 10년 갱신요구권의 10년이 도래하면서 10년차 이후 갱신거절을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③ 분쟁해결 시스템의 한계

가. 합리적 분쟁해결 시스템 미비

이러한 불합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제기하는 불공정거래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개별분쟁 중심에서 집단분쟁화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집단화 경향에 대해 분쟁해결 시스템은 기존의 개별분쟁 해결시스템에서 못벗어나 공식적인 분쟁해결 체계¹⁴⁾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장외로 나가 무기한 집회·시위·농성을 동반하고, 가맹점주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정치권·공식적인 분쟁기구가 아닌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음.

나. 프랜차이즈 집단분쟁 해결의 현실

a. (기존) 1차적인 제도적 분쟁해결 시스템¹⁵⁾ 무력화 경향

프랜차이즈 분야 1차적인 제도적 분쟁해결 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제기된 집단분쟁 중 단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아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경향이 있음.

b. 국회를 통한 해결

사실상 국회의 국정감사 등 정치력을 배경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2013년 이후 급격한 집단분쟁화 시기 대부분의 집단분쟁 해결기능을 담당

예)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본죽, 피자헛, 미스터피자(2015)

c.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해결

14)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 1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은 행정기구, 2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은 법원을 상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각종 실태조사 및 불공정 사건 상담, 간담회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기여하면서 집단분쟁에도 개입하면서 새로운 해결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음.

예) 미스터피자(2017)

d. 양 당사자 자체해결

최초 격렬한 분쟁 후 합리적인 합의가 된 영업표지(브랜드)를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일정한 분쟁해결 체계가 구축되어 일정한 문제해결 기능을 수행

예) 파리바게뜨, 본죽 등

3. 제도적 대안

① 서

불공정과 비효율을 시정하는 제도개선은 가맹사업의 도약을 촉진하는 성격을 가짐. 2013년 편의점업종에서 계속되는 편의점주 자살사태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자 가맹본사 측에서는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근간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므로 심야시간에 가맹점주에게 손실이 나는 경우라도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반 법 개정을 극력 반대함. 그러나 실제 개정이후 편의점업은 최소한의 불공정성 개선으로 안전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줄어 3년여가 지난 지금 출점이 급격히 늘었으며 가맹본사는 사상최대 호황임. 불공정을 제거하고 상생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제도개선은 가맹사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②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

가. 서

가맹점주 권리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접근은 주로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과 가맹점주의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나 단결권에서 출발한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단결권에 대한 이론적인 모색이 있고 2000년에는 단결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등장하여 2010년 이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다가 2013년 8월 13일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단체구성권(단결권)¹⁶⁾과 거래조건협의요청권(단체

교섭권 유사)17)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음. 그리고 현재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

나. 미국의 이론적 접근

미국의 경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아직 없으나, 1990년대 플로리다 로스쿨의 로버트 에머슨 교수가 근로계약과 가맹(프랜차이즈)계약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면서 일부 지방법원 판례들에서 거론되다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법적인 지위를 근로계약상의 노동자의 지위로 접근하는 경향18)과 가맹점 근로자에 대해 가맹본부를 공동고용주19)로 보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음.

다. 캐나다의 아더위샤르트규정20)

2000년 아더위샤르트규정은 가맹점의 단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21)하고 가맹본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판례들22)이 나오고 있음.

라. 우리나라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2016년 8월 13일 가맹사업법 일부개정 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항에서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권을 도입하고, 제2항에서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도입하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 19대 국회 말 단체행동권이 발의된 이후 현재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

③ 제도적 개선

가. 가맹본사 주 수익원을 개선하여 경제적 공동운명체 형성

○ 가맹본사 주 수익원을 로열티 중심구조로 전환하여 손익 연동구조 형성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기존의 유통마진, 인테리어 공사 수입 등 출점수익에서 로열티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14조 제1항

17) 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

18) 메사츄세츠 지방법원, Awuah v. Coverall North America Inc. (2010)

19) STEPHANIE OCHOA, ET AL., PLAINTIFFS, V. MCDONALD'S CORP., ET AL., DEFENDANTS. CASE(2016)

20) Arthur Wishart Act (Franchise Disclosure) 2000

21) Right of Association, Section 4 of Act 4.(1)

22) Ontario Limited Vs Midas Canada Inc.

Ontario limited Vs The Great Atlantic and Pacific Company of Canada Ltd

중심의 수익구조로 변환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손익이 연동하는 구조로 되어야 함.

< 참고. 공동체성 강조를 위한 복지시책 사례 >

1. '파리바게뜨' 제도

㉠ 가맹점주 복지제도

- 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생, 대학생)
- 가맹점주 건강검진
- 근속연수 포상
- 경조사 지원
- 우수점 해외연수 등 기회부여
- PB가족 소풍가요
- 명절선물

이들에 더하여 현재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공동출연에 의해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종료 시 퇴직금 유사기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가맹점 아르바이트(노동자) 관련

- 우수 아르바이트 학자금 지원 — 매년 200명씩
- 본사 공채 10%를 아르바이트에서 채용

2. 편의점 '세븐일레븐' 제도

- 건강검진 지원 : 5년 이상 운영 점주 및 가족 건강검진 할인혜택
 - 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생 자녀를 둔 우수 점주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 대학생 자녀를 둔 점주를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지원
 - 점주 자녀 채용 우대
 - 경조사 지원 : 점주 본인 및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및 물품지원
 - 점주 전용 복지물 운영 : 점주 전용 쇼핑물로 시중가 대비 할인혜택
 - 점주자녀 캠프운영
 - 점주 법인콘도 이용지원 : 2년 이상 운영 점주 대상 법인콘도 이용지원
- 세븐일레븐 공정거래 상생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구체적 제도개선안

: 필수물품의 정의 규정 신설 및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 신설

제2조(정의)

1 ~ 12 (현행과 같음)

13. "필수물품"이란 원재료 또는 부재료 · 용역 · 설비 등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정되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인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다. 물품을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특허기술·영업비밀 등 고유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7(부당한 필수물품 구매 강요 금지) ①가맹본부는 필수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필수물품의 구매강요행위로 본다.

1. 공산품·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등으로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2. 원·부재료에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소량포장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는 필수물품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필수물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힘의 균형 교정

가. 개선방향 -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위해 자영업자들이 일부 집단적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제법 영역에서 세계 최초로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등을 가맹사업법에 도입하였다(2013년 8월 13일). 그러나 아직 원론적 규정이외에 세부규정이 없고 교섭거부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음.

나. 구체적 제도개선안

제14조의3(단체활동 방해행위)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단체활동 방해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가맹점사업자

-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기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어느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가맹계약 체결 또는 유지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될 것을 가맹계약 체결 또는 유지조건으로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협의에 따른 협약체결 기타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가맹사업거래의 일시중지권 행사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 그에 관한 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33조(시정조치) ~ 제35조(과징금)의 행정제재 규정 도입

③ 분쟁해결 시스템 개선

가. 개선방향

a. 양적한계 대책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정 시키는 것은 30여 만 개의 가맹점 관리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된 인력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신속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시 실질적 심사를 통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가맹사업 위반 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함.

그리고 얼마 전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 행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으로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에 까지 확대하였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음. 따라서 현재 불공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장에게 고발요청권을 확대하거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b. 질적한계 대책

현재의 개별분쟁해결 시스템으로는 집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증명됨. 때문에 변화하는 분쟁양태에 맞는 분쟁해결 시스템이 필요. 특히, 힘의 불균형에

근거한 불공정이 근저에 있는 당사자간 분쟁을 대등한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방식과 동일하게 접근할 경우 결과적으로 상대적 약자에 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는 등의 심각한 한계가 있음.

때문에 이러한 특성까지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집단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실효적이고 공식적 집단분쟁해결 체계(기구) 마련이 필요

나. 구체적 제도개선안

우선적으로 양적한계에 대한 대책으로,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관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병존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 고발요청권자에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하거나 전속고발권을 폐지

중장기적으로 질적한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맺는말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몸부림이 사회적 이슈로 되며 갑을문제의 상징적 분야로 되어왔으나 구체적인 제도개선은 아직 미미하여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복조치 금지가 통과됐더라면 작년에 이 자리에 함께 했으나 멀리 떠나버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전미스터피자 이종윤 회장 사건도 없었을 것. 이번에도 제도개선이 안되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를 내년에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름. 가맹사업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손익이 연동하는 수익구조를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집단적대응권을 강화, 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가맹사업요건 구체화·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이루어야 함.

참고. 20대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과제 및 진행현황

2017. 08. 07.

● : 기 개정, ○ : 발의, ☆ : 발의 준비 중

번호	개정 과제	대표발의 의원 명																											
		전해철	홍의표	최운열	설훈	김관영	황주홍	고용진	김상훈	이학영	김성원	제윤경	민병두	박찬대	김선동	조배숙	정인화	박주민	조경태	박선숙	이양수	채이배	정재호	심상정	김경수	김규환	유동수	미발의	
1	거짓 기타 부정한 등록시 등록취소	●																											
2	공개 의무화				●																								
3	정보공개서 가맹점사업자 수익상황 필수 기재사항 추가 미등록자 신고포상금제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																		
4									○																				
5																										○			
6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연장										●																	
7	인테리어 공사 발주 시 경쟁입찰	○																											
8	영업지역 최소범위 설정 변경 합의 위반 시 제재규정								○										○										
9																											☆		
10	광고·판촉비 부과 가맹점주 사전동의								○				○											○					
11	필수물품 정의 규정 부당한 구입 강요 금지								○																			☆	
12										○	○																		
13	부당한 경업금지의무 부과 금지									○																			
14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 금지							○								○													
15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16	보복조치 금지										○		○										○	○					
17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삭제 기간연장(10년→20년) 보호강화								○	○																			
18																	○												
19	해지권 가맹점사업자 법정해지권 불법·부당해지 시 처벌 즉시 해지사유 삭제 해지통보 유예기간 연장								○	○																			
20									○																				
21											○																		
22																	○												
23	집단차치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거래조건 협의 요청 권 강화	○							○							○													
24			○						○							○													
25									○																			☆	

번호	개정 과제	대표발의 의원 명																										
		전해철	홍의표	최운업	설훈	김관영	황주홍	고용진	김상훈	이학영	김성원	제윤경	민병두	박찬대	김선동	조배숙	정인화	박주민	조경태	박선숙	이양수	채이배	정재호	심상정	김경수	김규환	유동수	미발의
26	휴업 등										○																	
27	가맹금 등 조정																						○					
	합의 시 당사자구속 효																											☆
28	단체활동 방해행위 시 형사처벌																											☆
29																												☆
30																												☆
31	공정위 권한	○																										
32	광역지자체 이관	○								○		○																
33	자체 이관	○									○	○																
34		○									○	○																
35	광역지자체,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
36	거래거절행위 법원 가치분에 의한 중지																											☆
37										●	●			●														
3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					
39																												☆
40	전속고발권 폐지		○																									
41	서면실 태조사			●																								
4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강요행위								○																			
43	불공정 계약조항 무효					○																						
44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						●							●														
45	과징금 상향										○							○										
46	가맹거래사 조정 등에서 의견진술											●																
47	위반행위의 신고 ●																											
48	위법행위의 금지청구권																			○								
49	오너리스크 등의 배상책임					○															○						○	

발 제 2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 과정에서 유통분야의 역할은 지역경제의 싹틔줄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금도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형유통업의 등장으로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유통업의 등장은 유통의 선진화라는 순기능 보다는 중소기업자의 몰락과 제조사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역기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되었으나 분쟁조정 신청 등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2016년 상반기 68건이 2017년 상반기는 107건으로 57%가 증가되었다.(대리점법 개정안 설명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

(1)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목표강제)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밀어내기 갑질로 인한 대리점주 피해를 양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회사측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과징금은 소송을 통해 대부분 감면을 받았고, 급기야 2014년 광주지역의 대리점에서는 밀어내기가 또다시 발생하여 대리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2007년 11월 쌍용자동차 대리점은 목표강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자동차에 과징금 9억8,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목표강제는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유통의 경우는 매출목표에 비인기품목 또는 재고 소진이 필요한 품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매출 목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자재의 경우 대형유통점에서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대리점의 매출이 약 20%가량 하락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하여 매출목표를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향 조정된 높은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있다.

밀어내기는 대리점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매출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매출목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판매시장의 적정 수량이 있기 때문에 재고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리점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재고를 처분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2) 부당한 계약체결 및 추가 약정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하더라도 공급업자는 수시로 추가약정서를 통해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의 추가약정서 작성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상의 협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식자재, 이동통신 공통)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전자승인을 통해 추가약정을 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을 주고 대리점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전산을 차단함으로써 인해 대리점 업무는 물론 고객응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쌍용자동차대리점의 경우 판매대리계약서상의 대리점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은 대리점법 제8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외에도 제13조 판매조건 위배, 제21조 비정상 영업행위 금지 조항 위배 등이 있어 표준계약서 권장이 요구되고 있다.

(3) 보복조치 피해

대리점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 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식자재의 경우 전속대리점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선포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는 비전속으로 계약한 대리점에 대해 전속대리점에 준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공급업자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을 출점을 시키고 영업분할, 또는 양도를 요구하는 등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대리점역시 무분별한 신설 대리점 확장으로 대리점간 과당 경쟁이 유발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차별적 취급

○ 공급차별

이동통신의 경우 대형유통(롯데하이마트, 삼성프라자 등)에 신제품, 인기품목 우선공급 하고 약 2주 후에 일반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대형유통의 경우 소비자 유인책이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소비자편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샘포대리점의 경우 대리점간 분쟁이 있는 대리점에 대해 주요제품 행사 중단, 행사직원 철수 등 보복에 가까운 공급차별을 받고 있다.

식자재의 경우 대형유통에 공급되는 가격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 되고 있으며, 대형유통과 대리점에 공급되는 품목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대형유통에 공급되는 품목이 포장단위가 다르다.(+1 포장)

- 라면의 경우 대리점에 공급되는 포장단위는 5개입 단위, 대형유통은 5개입+1 형태의 포장단위로 사실상 대형유통에 공급되는 가격이 대리점보다 20% 저렴한 것이다.

○ 판매장려금 차별

판매장려금 역시 대형유통사 보다 대리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 낮게 지급되고 있다. 공급업자의 논리는 대형유통사의 매출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판매비중은 20% 수준이고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80%이다.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 제3조 적용제외 조항의 1항 삭제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 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 다.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불공정거래는 공급업자의 기업규모나 형태가 원인이 아니며 거래상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계약갱신요구권 조항 신설

[참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갱신 요구권 조항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④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

- [참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
-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징금 조항 개정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2.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20호, 2016.12.23.,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제조업감시과), 044-200-4521

I.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란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이란 영 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 기준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3.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이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기준을 재차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기준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위반기간
 가.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되, 이와 같은 복수의 행위 중 가장 나중에 있었던 행위의 종료일을 전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6.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절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7. 법 위반금액의 산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IV.2.나. 관련)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시정조치 수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9. 조사가 개시된 날(IV.2.나. 관련)

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해 대리점의 수나 그 피해금액 및 손해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범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범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V.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을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대리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은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 기간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기본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3) 장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2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 IV.2.나.(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계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과 관련된 횟수 및 가중치를 제외한다.

다. 위 IV.2.가.,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모두 존재할 경우는 각 사유의 가중비율을 더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하되, 그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

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기준에 곱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더하거나 빼는 금액은 1차 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가중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조정기준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과징금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위반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 실질적 지급 능력,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12차 조정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2차 조정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각 행위 유형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법률상 상한액인 법 위반금액 또는 5억원으로 한다. 다만, 각 유형별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 조문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법 조문별로 산정된 부과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법 위반금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6-20호, 2016.12.23.>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범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과징금부과기준의 최우선 명문화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차원
- 과징금을 납부하고도 범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이 큰 경우 공급업자의 법준수 의식 저하
- 과징금부과 기준을 범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의 200%로 산정 기준 신설

○ 손해배상 책임 조항 개정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12조의 보복조치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토론문1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 김유진. 서울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팀장

1. 정책 환경

(1) 프랜차이즈 산업의 급속한 성장

- 프랜차이즈 산업은 시장규모가 약 100조원(GDP의 약 7%)에 이르고, 가맹본부는 '08년 1,276개에서 '16년 4,268개로 증가.
- 가맹점사업자는 '08년 107,354개에서 '16년 218,997개로 증가, 현재 가맹점사업자 관련 종사자 수는 약 70여만명(출처 : 통계청, 중소기업청, 공정위)

(2) 성장의 내실은 어떠한가?

-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난립) '16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브랜드가 1,308개였으나 '16년 취소¹⁾된 브랜드가 978개(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 가공)
- (지속가능성) 2014년 기준 월 평균 가맹점 신규 개점 수는 3.79개, 폐업 수는 2.80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가맹본부의 검증된 사업경험 여부) '15년 말 기준 직영점이 아예 없는 프랜차이즈는 3,108곳으로 전체의 58.9%, 직영점이 5곳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4.6% 차지(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3) 불공정 관행은 과연 개선되고 있는가?

- 서울시 '17년 8월 불공정집중신고기간 1달 운영결과 총 113건의 불공정행위신고 접수
 - ▶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과 같은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반환, 영업지역 침해 등 지속 발생

1) 직권취소 및 자진취소 브랜드를 합한 수치임

- 현행 가맹사업법 상의 허점 및 법 집행에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구심 존재
 - ▶ 양 당사자의 합의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 → 이를 악용하여 영업지역을 50미터로 기재, 영업지역 250미터 설정 후 270미터에 가맹점 출점
 - ▶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가맹점주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
- 광역지자체에의 권한 위임, 업무분담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감시와 피해구제 활동 확대 → 가맹사업법의 실효성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가맹사업법상 문제점

- 현행 가맹사업법 「정보제공», 「집단지치», 「불공정거래행위 등 규제」로 크게 3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보제공과 집단지치 측면에서 검토
- (정보공개 관련) 서울시 41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분석(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 ▶ 조사결과
 - 대다수 가맹본부가 설탕, 식용유, 일회용품 등 일반 공산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10개의 가맹본부는 아예 필수구입물품을 기재하지 않거나(3개), 추상적으로 기재(7개)한 사실 적발
 - 정보공개서 상 거래주선의 대가를 수령(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대가)한다고 기재한 가맹본부는 4곳
 - ⇒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적 운영에 대한 의구심 존재
 - ▶ 해외사례(미국) :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필수구입물품에 대해 상세한 정보제공의무 규정

(FTC, Franchise Rule)

①품목명, ②공급업체가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사인지 여부, ③공급업체와 가맹본부 임원의 이해관계 여부, ④공급업체 외에 타 공급업체를 인증해 주는지 여부 및 인증절차, ⑤가맹본부·계열사가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그 내용, ⑥가맹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전체 상품·용역·설비 구입비용 중 필수품목의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⑦공급업체가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금액 및 내용, ⑧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대변해 공급업체와 가격을 협상하는지 여부, ⑨가맹점사업자가 공급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가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 (집단지체 관련)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을 규율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 ▶ 법 개정이후 집단적인 자율적인 거래조건 협의가 이루어진 사례 미비('13~'16, 21 차례)²⁾
 -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조직적 방해 및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
 - ▶ 향후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운영'을 통한 문제 개선 기대 및 이에 대한 지원 필요

(2) 정책 과제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 서울시 8월 한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신고사건의 30%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정보제공
 - ▶ 무자격 컨설턴트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날짜 소급기재, 근거 없는 예상매출액 구두제공 등
- 계약체결 단계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정보 제공은 입증하기 어려운 바 가맹거래사·변호사 등 전문가 사전자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제도개선 필요
- 상세한 정보제공의무 규정 마련, 정보공개서 등록 시 실질적 심사, 정보공개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가맹본부에 원상회복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무 부담 등 법령개정 필요

<상생협약 등 거래조건 협의제도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 예컨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에 대한 절차 및 운영 요령, 거래조건 협의의 대상,

2) 상생협약 역시 을지로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실을 통해 체결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 기능, 절차, 효력, 협상기술 등 실무에 대한 교육과 거래조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제도 등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지자체의 역할)
- 가맹점사업자단체에의 가맹본부의 조직적 방해나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 변화 필요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운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교섭 제의에 가맹본부가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 신설 및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단체 방해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등 사업자단체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제도 마련 검토 필요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업종별, 지역별 모범거래기준과 모범상생협약안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방안 고려 필요

3. 서울시 추진현황 및 계획

(1)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 ▶ 방문상담(매주 금) 및 인터넷 상담(수시) : 변호사 11명, 가맹거래사 9명
- ▶ 불공정피해 상담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접수 지원
- ▶ 상담실적 : 총745건('13.5월~'17.7월), 피해구제 총 27건('15년 ~ '17.5월)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자문서비스 실시 확대로 기능강화('17.9.8~)

(2) 불공정피해실태조사 실시

- 총 7차례 불공정피해실태조사 실시('13~'17)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17.8월, 총 신고 접수건수 113건)

(3) 상생협약 체결 문화 정착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원활한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등 상생문화 정착 지원
 - ▶ 서울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불공정호민관 4명을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에 파견
 - ▶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거래조건협의 실무교육 실시 ('17.8.25. C가맹점사업자단체교육)
 - ▶ 서울시, 미스터피자 가맹점 분쟁 관련 상생협약 체결지원('17.4)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218일간 농성지속하자 5개월간 지속적인 협의, 중재 진행

- 향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원활한 구성 및 상생협력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조건협의 매뉴얼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영업지역 범위 등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배포 및 권고할 계획
- 필수적이지 않은 식자재 구입강요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 지원 사업(연내 추진)

4. 제언

- 중앙정부 이외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정거래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일은 다양함. 물론 이러한 활동이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위임이 전제되어야 함.
- 또한 현재 발의되거나 예정인 가맹사업법 적용범위 확대, 필수적이지 않은 식자재 구입강요 행위, 정보제공제도의 실효성 강화, 예상매출산정서 제도의 실질적 운용 등 법령을 정비하고,
- 지자체와 협업하여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하여야 함.

토론문2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개선방안

- 양기만,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장

토론문3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토론문4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토론문5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 이동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1. 신속한 행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주요정책과 관련한 사건의 처리에 집중되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가까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아¹⁾ 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중소기업 등 피해자의 원망이 높아지고 있음.
- 검찰은 3개월 내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참고인중지 또는 기소중지와 같은 중간처분을 하면서 중간처분을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내부결재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건조사의 장기화를 간접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공정위도 현재 6개월인 내부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단축해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의결을 포함한 절차 전반을 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 또한 절실함.

2. 책임있는 행정

- 심사종결은 재판을 진행하다 재판중단을 선언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위의 조사관련 행정에는 사실관계 확인곤란 등을 이유로 심사절차나 심의절차 종결이 남발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1) 2015년 김기식 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신고 후 무혐의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2010년 112일에서 매년 늘어나 2011년 149일, 2012년 129일, 2013년 245일, 2014년 215일, 2015년 240일 등으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3개월(90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검찰조사 절차와 비교하여 매우 장기간의 조사기간이 소요됨.

- 현행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정위가 조사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규정까지 두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확인곤란이나 시장상황 등을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하는 현재 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자 현행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관행으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함.
- 일부에서는 시장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처리절차를 강제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근거가 미약함. 법 위반 행위가 없다면 무혐의조치가 이루어지면 되고, 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부터 과징금까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면 됨.
- 끝으로, 당사자의 소재불명이나 영업중단 등 조사를 계속할 사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에도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만큼 심사절차종료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3. 투명한 행정

- 심사보고서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내부문서와는 달리 신고된 법 위반사항을 가장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한 조사관의 판단 및 근거를 담은 문서인 만큼, 무혐의나 경고 등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 및 처분이 일원화된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판단을 다시금 거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이 과정에서 최초의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내용이 심의과정에서 왜 바뀌었는지 혹은 왜 그대로 인정되었는지에 대한 전체 과정 및 판단 근거에 대하여 신고인은 알 권리가 있음.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법 위반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될 뿐만 법치행정을 전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행위가 합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위원회 심결을 둘러싼 압력 행사, 심사관과 위원회 결

정 간의 조치수준 불일치에 대한 오해(봐주기 논란) 등으로 공정위의 독립성 및 공정한 심결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조사나 심결과정에서의 압력행사나 봐주기 논란은 오히려 심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비공개 및 의결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됨. 심사보고서 내용 및 근거의 투명한 공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심결의 판단 및 근거의 투명한 공개는 오히려 앞선 압력행사나 봐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어 공정위의 독립성 및 공정한 심결에 기여할 수 있음.

- 참고로 현행 형법 및 형사소송법 역시 피고소인의 법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한 고소권자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등 어떠한 이유로도 그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한편, 현재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건관련 기록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피해자들이 가해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심사보고서 공개와 함께, 법원의 해당사건과 관련된 기록 송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4. 예방적 행정

- 신임 위원장님이 강조하시는 소프트규제의 일환이자,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범상생협약안 등을 공정위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 모범상생협약안이 만들어 지고, 가맹사업, 대리점업, 대규모 유통업 등 각 분야에서 해당 협약안이 사용되어 질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인식하고, 상호 동의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많은 분쟁들을 예방할 수 있음.

5. 협력행정

-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거래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급업체 등을 보호하는 공정경쟁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6대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불공정행위 조사와 시정조치, 시정명령, 검찰고발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시는 2013년부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가맹점, 대리점 등의 불공정 피해 상담을 받고, 화장품 대리점, 외식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행정을 해 오고 있음. 최근에는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후견적 행정지원과 공정거래에 충실한 본사에 대한 인증제도 등 다양한 공정경쟁 행정을 시도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경제과를 신설하고 불공정피해상담과 실태조사,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음.
- 한편, 최근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가 해당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불공정행위를 막아 시장왜곡을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음. 재벌들의 비리 수사를 할 때마다 검찰수사로 경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항상 있어 왔지만, 재벌총수들이 실형을 받아 수감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그러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음.
-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하되, 검찰에 전문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 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